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규정 3-1-8

규정번호 3-1-8
제정일자 1988.2.6
최근개정 2024.7.24
개정차수 11차 개정
관리부서 교무입학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명지학원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 정관 제43조 및 법인인사규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명지전문대학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, 기획실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교수 로 구성한다.(개정 2018.2.5.)

② 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(개정 2021.10.25.)

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3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(개정 2024.7.24.)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.(개정 2024.7.24.)

제4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정년보장 임용여부 결정을 위한 의결 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.

④ 위원 중 자신에 관한 심사 시에는 그 심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참석할 수 없는 위원수 만큼 재적위원에서 감한 수를 재적위원수로 한다.

제5조(회의록작성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개정 2021.10.25.)

제6조(심사기준 및 방법) 정년보장 교원임용 여부 심사는 전문대학 교원인사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교수업적평가 심사기준을 적용한다

1. 연구성과 및 전공적합성
2. 교육능력 및 학생지도
3. 학교 및 학과발전에 대한 공헌과 교원품위유지

제7조(심사대상) 우리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 중 정년까지 임용할 수 있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.

1.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정교수
2.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임용되는 교수
3. 정교수로 신규임용되어 최초 임용기간 3년이 만료되는 교수

제8조(정년보장 임용제외자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년보장 임용교원에서 제외한다.

1. 법인인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해당자
2. 법인인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 해당자
3. 교수업적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

제9조(삭제)

제10조(심사자료)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삭제)
2. 승진 점수 충족 연구실적물
3. 교수업적평가 심사평정표
4.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

제11조(삭제)

제12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에 필요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2월 6일부터 시행하되, 1997년 9월 1일 이후 승진 및 재임용 대상교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학칙) <2009.2.26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9> <생략>

<10>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①, 제4조①, 제5조, 제12조 중 “학장”을 각각 “총장”으로 한다.

<11> - <102> <생략>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직제규정) <2013.7.1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11> <생략>

12>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①항의 “산학협력처장, 학생처장”을 “산학협력처장, 학생지원처장”으로 한다.

<13> - <30> <생략>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1항, 제3조제2항)